

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
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5. 3. 24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02호로 2025년 3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2025. 1.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인원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위원회의 구성인원·대상 정비(안 제11조제4항제1호)

1. 직제순에 따른 표기 순서 조정
2. 당연직 구성인원 변경 (총무과장 → 미래공간과장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2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2025년 1월 1일자로 영등포구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는 개편된 행정기구의 직제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열거 순서를 정비하였고,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미래공간과를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**총무과장을 제외** 하고 소관 부서인 **미래공간과장으로 대체함.**

	당연직 위원
현행	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, 미래도시국장, 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
개정	미래도시국장, 행정국장, 기획재정국장, 복지국장, 미래공간과장, 기획예산과장

○ 검토결과

- 영등포구는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

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(2024.12.06. 시행 2025.01.01.)하였으며, 행정기구 개편 사항 중, 공공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미래공간과를 신설함.

- 본 조례가 제정된 당시에 총무과 소관임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이 임명됨. 한편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두 차례의 전부개정(시행 2023.01.01., 시행 2025.01.01.)으로 본 조례의 소관이 두 번 변경되었으나 총무과장은 그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었음. (총무과→도시계획과→미래공간과).
- 이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의 장인 미래공간과장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청사건립기금 소관 변경 경과

시행날짜	내 용	소 관
2022. 7. 1.	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정	총 무 과
2023. 1. 1.	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 ○ 도시계획과 소관 신설 14.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15.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	도시계획과
2025. 1. 1.	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 ○ 미래공간과 신설 1.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5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	미래공간과

참고 자료

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4조의2(미래도시국) ① 미래도시국에 미래공간과, 청년정책과, 정원도시과를 둔다.

② 미래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청사건립, 공공문화시설 건립,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
2. 청년정책·지원에 관한 사항
3. 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보전, 조경계획·조경시설 설치 및 관리, 수변생태복원 및 수변공원화, 정원조성 및 관리, 정원여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24. 12. 6.]

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7조(미래공간과) 미래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
2. 동 청사 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
3. 공연장,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(소규모 문화시설 제외)
4.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(소규모 체육시설 제외)
5.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11조(총무과)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보안 및 청사 방호	23.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
2. 의전 및 주요 행사 운영	24.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
3. 구청장 사무인수인계	25. 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
4. 청사 건물 유지 관리	26. 공무원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
5. 차량 및 그 밖의 행정장비 유지관리	27. 대·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
6. 통합방위협의회 및 각종 군부대 훈련 지원	28. 국제도시와의 친선결연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
7. 예비군 지역대 지원	29. 국내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
8. 직장 민방위대 운영	30. 민간단체의 해외교류 사업 지원
9. 재향군인회 지원	

<p>10. 공무원의 임용</p> <p>11.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 통계</p> <p>12.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, 서열명부 작성 관리</p> <p>13. 복무 및 상훈</p> <p>14. 구 인사위원회, 고충심사위원회, 공적심사위원회 운영</p> <p>15. 공무원 신분 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</p> <p>16. 조직 관리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p> <p>17. 공무원 보수 규정 및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</p> <p>18.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</p> <p>19.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</p> <p>20. 직원 후생복지(선택적 복지, 휴양시설 등)에 관한 사항</p> <p>21. 직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22.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</p>	<p>31. 그 밖에 제반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</p> <p>32.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</p> <p>33. 국가 정보화, 행정 정보화, 지역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34.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통한 사항</p> <p>35.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6.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7. 자문위원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38. 서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39. S/W 도입·보급에 관한 사항</p> <p>40. 구민과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활용에 관한 사항</p> <p>41. 정보화 교육장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42.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</p> <p>43. 청내 다른 국·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</p>
--	---